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21 발의연월일: 2025. 1. 17.

발 의 자:서영교・이건태・이연희

한정애 • 박희승 • 김문수

위성곤・윤준병・허 영

추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역 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정서에도 어긋남.

이에 전역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범죄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법률 제 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을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으로, "경우에는 이미 낸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급한 퇴직 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와 퇴직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급여는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아 혂 행 개 정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 한) ① ~ ③ (생 략) 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④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사유 제2편제1장(내란의 죄) · 제2장 로 「형법」 제2편제1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 제2장[이적 (利敵)의 죄], 「국가보안법」 (제10조는 제외한다), 「군사기 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 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시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 점부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 수급한 퇴직 급여(연금인 급여 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 를 제외한다)와 퇴직 수당을 전 액 반환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 다. 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 하지 아니한다.